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 채용공고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근무할 학예연구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6일
국가보훈처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직급	채용 분야	인원	근무예정부서(지역)
학예연구사	자료수집·보존	1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연구교육과 (서울 서대문구)

2. 채용예정 분야 담당 업무

채용예정직급	인원	분야	주요 업무
학예연구사	1명	자료수집·보존	○ 자료 수집 및 관리(수증·수탁·구입·등록) ○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운영 ○ 소장자료(종이류)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 직무기술서 참고 : 주요업무, 필요역량 등 상세 기재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자격

○ 공통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2022.2.2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2022.2.24.)]

채용 자격 요건	
○ 학예연구사	
학위 요건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1.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공무원경력) (*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6급 경력기준) 2.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민간경력)
(관련 학위)	역사학(독립운동사 또는 일제침략사 전공자에 한함).문화재학.문화재관리학.문화재 보존학.문화재보존예술학
(관련 경력)	박물관.기념관 등 자료 수증.수탁.구입.등록 등 관련 업무, 박물관.기념관 등 소장품 보존관리 분야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응시**(요건 중복선택·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 있으며 중복선택·미선택 시 부적격 처리)
 - 학예연구사 : **학위요건(석사학위), 경력요건1(6급 상당 공무원경력), 경력요건2(민간경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종경력이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요건 응시자는 해당 없음**)

<경력 및 학위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는 주당 근무시간 기재)과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등),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과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 제출한 경력이 응시요건의 '관련 경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학위요건은 관련 학위에 해당하는 전공학과를 기준으로 판단(단, 역사학 전공자의 경우에는 **학위증명서 상 역사학을 전공함이 확인되고 제출한 학위논문의 내용이 독립운동사 또는 일제침략사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22.2.9.)]

임용예정직위	우대요건					
학예연구사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길수록 우대)					
	○ 관련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위는 제외					
	○ 관련 분야 연구논문 발간실적(학위논문 제외) - 평가대상 논문범위 : SCI, SCIE, SSCI, A&HCI, SCOPUS, KCI 등재 논문 - 공동저자 논문은 차등 배점 - 응시자격 충족 이후 실적에 한함					
○ 관련 자격증 보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표구공, 정학예사 1~3급, 준학예사						
○ 어학능력(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성적 우수자						
	구분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신HSK	JPT	JLPT	DELF/DALF	TORFL
	점수	5급 210점 이상	740점 이상	N2 150점 이상	B1 이상	1단계 이상
*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 인정						

[우대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단, 어학능력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 인정)
- 우대요건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요건(학위 또는 경력기간) 충족 후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
 - (예시1) 2000. 12. 31. 관련 학위 취득 시 2001. 1. 1. 이후 관련 분야 경력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 (예시2) 2000. 12. 31.자로 6급 상당 근무경력 3년 이상 요건 충족 시 2001. 1. 1. 이후 관련 분야 경력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 (예시3) 2000. 12. 31.자로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 요건 충족 시 2001. 1. 1. 이후 관련 분야 경력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 자격증 및 어학성적 보유
 - 자격증 및 어학성적은 등급(또는 점수)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중복될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5. 시험방법

- 제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7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7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함(7배수 동점자 발생으로 7배수까지 인원이 7배수를 초과할 경우 추가합격 가능)
 -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
- 제2차(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6. 직무기술서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수집 및 관리(수증·수탁·구입·등록) ○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운영 ○ 소장자료(종이류)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현대사 자료에 대한 높은 이해 ○ 소장품의 과학적 보존 및 관리에 대한 높은 이해
-------------	---

관련분야 : 자료 수집·보존																				
응시 자 격 요 건	학위 요건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요건 1.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직급 상당경력 3년 이상인 자(공무원경력) (*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6급 경력기준) 2.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민간경력)																			
	(관련 학위) 역사학(독립운동사 또는 일제침략사 전공자에 한함)·문화재학·문화재관리학·문화재보존학·문화재보존예술학 (관련 경력) 박물관·기념관 등 자료 수증·수탁·구입·등록 등 관련 업무, 박물관·기념관 등 소장품 보존관리 분야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길수록 우대) ○ 관련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위는 제외 ○ 관련 분야 연구논문 발간실적(학위논문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논문범위 : SCI, SCIE, SSCI, A&HCI, SCOPUS, KCI 등재 논문 - 공동저자 논문 일부 인정 - 응시자격 충족 이후 실적에 한함 ○ 관련 자격증 보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표구공, 정학예사 1~3급, 준학예사 ○ 어학능력(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성적 우수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2">구분</td> <td>중국어</td> <td colspan="2">일본어</td> </tr> <tr> <td>신HSK</td> <td>JPT</td> <td>JLPT</td> </tr> <tr> <td>점수</td> <td>5급 210점 이상</td> <td>740점 이상</td> <td>N2 150점 이상</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2">구분</td> <td>프랑스어</td> <td>러시아어</td> </tr> <tr> <td>DELF/DALF</td> <td>TORFL</td> </tr> <tr> <td>점수</td> <td>B1 이상</td> <td>1단계 이상</td> </tr> </table> <p>*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 인정</p>	구분	중국어	일본어		신HSK	JPT	JLPT	점수	5급 210점 이상	740점 이상	N2 150점 이상	구분	프랑스어	러시아어	DELF/DALF	TORFL	점수	B1 이상	1단계 이상
구분	중국어		일본어																	
	신HSK	JPT	JLPT																	
점수	5급 210점 이상	740점 이상	N2 150점 이상																	
구분	프랑스어	러시아어																		
	DELF/DALF	TORFL																		
점수	B1 이상	1단계 이상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2. 18.(금)

※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

○ 면접시험 : '22. 2. 24.(목)

※ 면접시험 일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2. 3. 8.(화)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변경·연기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및 제출한 응시원서 상 이메일 주소로 안내 예정)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2. 2. 7.(월) ~ '22. 2. 9.(수)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응시수수료 : 학예연구사 7,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전자수입인지 가능)

○ 접수처 : 국가보훈처 5층 운영지원과(☎ 044-202-5313)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
(우편번호 30113)

※ 겹봉투 표지에 '임정기념관 학예연구사 공무원 응시원서 재증' 기재

※ 접수 마감일(2.9) 18:00 이전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택배·전자우편·퀵서비스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9.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 부착하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인쇄하여 응시원서 뒤에 첨부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경력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표지는 작성하지 말 것)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용지 4매(요약서 1매 포함) 이내(표지는 작성하지 말 것) -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필수
5. 관련 경력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현재 근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여 제출 ※ 시간제 근무 시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예 : 주당 20시간)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담당업무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서식 제5호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 확인을 받아 제출 (해당 기관 담당자의 서명과 기관 직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 	해당자만
6. 관련 학위 증명서 1부	<p><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필요 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학사학위 이상)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는 응시요건 확인,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을 제공하지 않음 	해당자만
7. 학위논문요약서 (별지서식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 관련 증빙자료 첨부 (논문표지, 지도교수, 논문요약 표시 페이지 사본 반드시 제출) 	해당자만
8. 연구논문요약서 (별지서식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논문 관련 증빙자료 첨부 (논문표지, 지도교수, 논문요약 표시 페이지 사본 반드시 제출) 	해당자만
9. 자격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 1부 	해당자만
10. 어학성적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성적(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증빙서류 1부 	해당자만
11. 주민등록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병역사항 불충분 시 병적증명서 함께 제출) 	필수
12.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서명 필수) 1부 	필수
13.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 중 1종에 대한 확인서 제출(예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발급 가능 	해당자만
14.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경력(상근·비상근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발급 가능 	해당자만

- ✓ 제출서류는 위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클립 또는 집게로 전체를 묶음,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 ✓ 제출서류 중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학위·자격·어학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여부 확인 예정
- ※ 담당자 이메일 henrygo@korea.kr (보완서류 제출 시 참고)

10. 기타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희,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응시서류 등 일체의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시 발생하는 우편비용 등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공고문의 별지서식 제9호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제출**하여 신청)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채용시험 합격자에게 준용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 준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 ~ 제7호 위반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할 수단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공지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하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절차 관련 : 운영지원과 채용 담당(☎ 044-202-5313)